

인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7나9466(본소), 2018나2738(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윤봉규

변론 종결 2020. 2. 28.

판결 선고 2020. 3. 27.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0. 선고 2017가소135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8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456,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4,820,000원 및 그중 32,43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38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기 제조업, LED 모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도소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LED 보드(기판), LED안정기(컨버터), LED 센서 등(이하 위와 같은 LED 조명 부품을 'LED 조명기구'라고하고, 이들을 결합한 완제품을 'LED 조명기기'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까지 피고가 반품을 요청한 LED 조명기구를 회수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미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였다. 2016. 2. 18.을 기준으로 미수 매매대금은 18,456,400원이 남아있다.

라. 한편 LED 안정기 1개와 LED 보드 1개 또는 여럿이 결합하여 1개의 LED 조명기기를 구성하는데, 원고가 판매한 25W용 안정기 또는 60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조명기기의 경우 제품 1개당 안정기 1개와 보드 1개가 결합하고, 50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 조명기기의 경우 제품 1개당 안정기 1개와 보드 2개가 결합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LED 조명기구 거래 후 남은 매매대금 18,45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1) A/S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2016. 1. 1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설치한 LED 조명기기 418개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A/S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A/S비용 합계20,900,000원[= 418개 × 50,000원(1회 A/S비용)]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2.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매수한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설치한 LED 조명기기 191개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A/S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A/S비용 합계 9,550,000원[= 191개 × 50,000원(1회 A/S비용)]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보관 중인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6. 1. 12. 이후에 소비자에게 판매 및 설치한 LED 조명기기 중 191개를 하자를 이유로 회수하여 보관 중이고, 원고로부터 매수한 LED 안정기 29개는 KC인증번호 불일치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피고가 보관 중인 하자 있는 물품에 관한 매매대금상당의 손해배상금 4,3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34,820,000원(= 20,900,000원 + 9,550,000원 + 4,370,00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채권 18,456,4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18,456,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A/S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이에 소비자들로부터 LED조명기구의 수리를 요청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29., 2015. 12. 31., 2016. 2. 18. 등 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ED 조명기기 418개 상당의 LED 조명기구를 반품한 사실, 피고가 현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ED 조명기구 중 LED 안정기 220개, LED 보드 361개를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ED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원고 대신 A/S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하였거나 보관 중인 LED 안정기의 개수를 근거로 총 609회(= 418회 + 191회)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A/S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가 언제, 어디에서 A/S를 제공하였는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이에 소비자들로부터 LED 조명기구의 수리를 요청받았으나, 피고가 2015. 1. 1.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E과 거래를 하여 왔는바, 위 수리요청시기와 거래시기를 대조해 볼 때 피고가 수리를 요청받은 물품이 전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ED 조명기구와 관련된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③ 설령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한 LED 조명기기가 원고가 공급했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원고가 무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에 관한 것인지, 소비자의 사용상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그 하자를 원고가 수리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수리하였는 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도 피고에게 판매한 LED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126회에 걸쳐 A/S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 참조)].

④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최고장(을 제3호증)에는 '귀사의 늦장 대응으로 인한 당사의 출장A/S 및 지방의 물건회수 시 발생한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보관 중인 LED 조명기구를 전부 A/S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나. 피고가 보관 중인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보관 중인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보관 중인 LED안정기 220개 중 170개에 전혀 동작을 하지 않거나, 전압변동이 크거나, 과전압 스파이크가 발생하거나,

KC인증번호가 불일치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불량률 약 77%), LED 보드의 경우 361개 중

157개에 부분적으로 점등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깜빡거리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불량을 약 43%)이 인정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의 발생

위 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보관 중인 LED 안정기 170개 및 LED보드 157개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LED 조명기구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로서 상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최종 납품받은 2015년8월부터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위 물품에 대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도소매점을 운영한 자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는바(상법 제47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LED 조명기구 매매는 상법 제69조에서 정한 상인간의 매매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2015. 8. 31.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 중인 LED 조명기구에 대한 하자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2016. 2. 18.까지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요청한 LED 조명기구에 관하여는 이미 반품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완전이행

피고가 보관 중인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ED 안정기 220개 중 170개, LED 보드 361개 중 157개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LED 조명기구를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LED 조명기구를 피고에게 공급한 것은 LED 조명기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LED 조명기기의 경우 제품 1개당 LED 안정기 1개와 LED 보드 1개 또는 2개가 결합되어 1개의 제품을 구성하므로 LED 안정기 또는 LED 보드 중 어느 하나가 불량이어도 LED 조명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았고 종류별로 거래가격에 차이가 나는데 하자가 있다고 판별된 LED 안정기 또는 LED 보드 각각의 종류 및 거래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나아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5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 조명기기(총 24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은 약 18.83%, 50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 조명기기(총 166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은 약 8.07%, 60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 조명기기(총 30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은 0%이고, 종합하면 LED 조명기기 1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은 8.15%에 불과한 점, 이에 비추어 피고가 보관 중인 LED 조명기구가 모두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가 하자를 이유로 반품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5W용 안정기 사용제품 24개, 50W용 안정기 사용제품 166개, 60W용 안정기 사용제품 1개 및 60W용 안정기 29개(인증번호 불일치로 사용하지 못한 물품)의 거래가격(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5W용 안정기 사용제품 및 60W용 안정기의 거래가 적은 각

10,000원, 50W용 안정기 사용제품 및 60W용 안정기 사용제품의 거래가격은 각 20,000원으로 인정한다)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구체적인 손해액을 3,870,000원(= 25W용 안정기 사용제품 24개 × 10,000원 + 60W용안정기 29개 × 10,000원 + 50W용 안정기 사용제품 166개 × 20,000원 + 60W용 안정기 사용제품 1개 × 20,000원)으로 산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8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반소청구로서 구함과 동시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매매잔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본다.

1)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 18,456,400원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870,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양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위 양 채권은 늦어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2015. 8. 31. 무렵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LED 조명기구에 존재하는 하자는 공급일 전에 제작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4. 25.자 준비서면을 같은 달 27. 원고의 대리인이 영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로써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3,87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위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중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에 남아 있는 매매대금 14,586,400원(= 18,456,400원 - 3,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3.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우, 판사 오흥록, 판사 윤성현